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- 1. 납 세 자 : *****
- 2. 부과취소사유 : 납세자 착오신고에 따른 과다납부(일부취소)
- 3. 건수 및 세액

(단위: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건	12.288.840	11.059.950	1.228.89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결의결정서 1부.
 2.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국세청통보자료 1부.
 4. 환급청구서 및 기타서류 1부. 끝.

주무관 김지선 지방소득세1팀 이덕배 세무2과장 김광수 기획경제국장 07/07 문경수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23023 () 접수 ()
 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 전화 02-3423-5716 /전송 02-3423-8834 / jisun0706@gangnam.go.kr / 부분공개